의안번호	2211780
의 뢰 인	최은석 의원
회 답 일	2025. 8. 14.
추계번호	25G38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시근로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고령자 연령 하향조정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일부 추계)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수는 2027년 1조 2,611억 원, 2031년 1조 1,413억 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1조 29억 원(연평균 2조 2,00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동 추계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액은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의 고령자 조건을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에 대한 세수효과는 제외된 금액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개정안의 세수효과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고용증대 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은 세액공제가 3년간 적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세수효과는 2027~2031년까지 발생함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소득세 및 법인세, 2027~2031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안 제29조의8 제1항)	12,611	25,260	36,680	24,065	11,413	110,029	22,006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9조의8 제1항 (통합고용세액공제)	○ 상시근로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 청년등 상시근로자 중 고령자 기준을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 – (현행) 60세 이상 → (개정안) 55세 이상	
2	안 제30조 제1항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의 고령자 연령 기준을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 (현행) 60세 이상 → (개정안) 55세 이상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29조의8제1항 (통합고용세액공제)	○	상시근로자에 대한 적용기한 3년 연장 추계
		×	55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증가 인원 수 증가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에서 제외
2	안 제30조 제1항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동 추계서에서는 개정안 중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세수효과만을 추계하여 제시하고 있음

○ 개정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1)]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고령자 연령 요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

○ 고용 관련 조세특례의 고령자 나이 요건을 하향 조정할 경우 공제·감면 대상자가 확대되어 소득세 및 법인세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해당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부재하여 이를 추계하기 어려움

– 통합고용세액공제 감면액 추계를 위해서는 기업규모 및 지역별로 55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의 증가된 인원을 추정해야 하며,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의 경우 확대된 감면 대상자의 소득세 부담 규모 등을 파악하여야 하지만 관련 자료가 부재

❑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 세수효과는 신고 및 납부시기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

○ t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t+1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t+1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

1)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보건업(병원, 의원 등), 금융 및 보험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제외), 일용근로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업종은 제외되며, 중소기업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 등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

○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는 공제요건이 충족된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는다면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공제가 발생하여 각 년도의 공제실적을 발생연도에 따라 구분할 필요

- 신규 공제대상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 규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동일한 금액을 지속해서 감면받는다고 가정하며, 상시근로자 수의 전년대비 감소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

❑ 2023년 신고기준 공제실적의 기업규모별·지역별·근로자 유형별 비중은 과세자료 및 「사업체패널조사」 등의 비중을 따른다고 가정하며, 향후 신규 발생하는 공제액은 취업자 수 증감율 전망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정

○ 동 제도는 2022년 세법개정으로 기존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5개의 개별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 도입으로 통합

-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는 기존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 1인당 400~1,550만 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1인당 공제액은 기업규모별·지역별·근로자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

○ 기업규모별 공제액 비중은 국세청에서 제출한 2019~2023년 신고연도 기준 기업규모별 공제자료를 바탕으로 구분

- 다만 소득세 공제액은 2024년 신고연도 기준 실적을 사용하고, 사업 규모를 감안하여 전액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였다고 가정

○ 지역별 공제액 비중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2019~2022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연평균 비중이 2023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공제액의 수도권 비중('19~'22년 평균, %): 중소기업 70.0, 중견 및 대기업 72.3

○ 근로자 유형별 공제액 비중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9차년도(2021년 기준)로 산출한 전년대비 고용증대 기업의 일반 상시근로자와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비중이 20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

- 「사업체패널조사」상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비중: 중소기업 52.8%, 일반법인 59.9%

○ 향후 신규 발생하는 공제액은 국회예산정책처(2024.10.)의 취업자 수 증감율 전망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가정

3. 상세 추계내역

1) 제도 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5개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를 통합하여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하여 운용

○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근로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합

– 기본공제는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포함

[표 2]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舊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1인당 공제액

(단위: 만 원)

			고용증대세제					통합고용세액공제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소기업	청년 등 상시근로자[1]	수도권 내	1,000	1,100	1,100	1,100	1,100	1,450	1,450
		수도권 밖	1,100	1,200	1,200	1,200	1,300	1,550	1,550
	일반 상시근로자	수도권 내	700	700	700	700	700	850	850
		수도권 밖	770	770	770	770	770	950	950
	공제기간		2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중견기업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도권 내	700	800	800	800	800	800	800
		수도권 밖	–	–	–	900	900	–	–
	일반 상시근로자	수도권 내	450	450	450	450	450	450	450
		수도권 밖	–	–	–	–	–	–	–
	공제기간		2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대기업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도권 내	300	400	400	400	400	400	400
		수도권 밖	–	–	–	500	500	–	–
	일반 상시근로자	수도권 내	–	–	–	–	–	–	–
		수도권 밖							
	공제기간		1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주: 1)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청년(19~34세, '22년은 19~29세), 고령(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22년 미포함) 상시근로자 등이 포함

❑ (감면실적) 2019~2023년 신고기준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2019년 7,317억 원에서 2023년 2조 9,339억 원으로 증가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 귀속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4년 신고분부터 집계

[표 3] 舊 고용증대 세액공제 실적: 2019~2023년

(단위: 억 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소득세		1,972	4,283	6,336	8,898	11,191
법인세	중소기업	3,784	6,212	9,002	11,950	14,027
	중견기업	846	1,300	1,491	2,061	2,396
	대기업	714	1,017	1,131	1,257	1,725
	소계	5,345	8,529	11,625	15,268	18,148
합계		7,317	12,812	17,960	24,166	29,339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신고기준)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방법

❑ (추계방법 개요)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하여 2023년 신고기준 실적을 발생연도별·기업규모별로 구분한 후, 제도변화 및 향후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추계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4년 신고분부터 집계됨에 따라 현재 세법개정 이전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실적만 추계에 활용 가능

○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공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공제실적을 발생연도별로 구분하여 추계

- 개인사업자의 공제액은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전액 중소기업의 공제액으로 가정
- 가령 2023년 공제실적의 경우, 2021년에 신고된 중소·중견기업의 공제액과 2022년에 신고된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공제액, 2023년에 신규 발생한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공제액이 모두 포함

[표 4]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舊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세수효과 발생연도

(단위: 억 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1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	A_{21}	A_{21}	A_{21}		
	대기업	B_{21}	B_{21}			
'22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		A_{22}	A_{22}	A_{22}	
	대기업		B_{22}	B_{22}		
'23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			A_{23}	A_{23}	A_{23}
	대기업			B_{23}	B_{23}	
합계		$A_{21}+B_{21}$	$A_{21}+B_{21}+A_{22}+B_{22}$	$A_{21}+A_{22}+B_{22}+A_{23}+B_{23}$	$A_{22}+A_{23}+B_{23}$	A_{23}

주: 1) 2021년 신고된 신규 공제는 2020년 고용증대로 인하여 발생한 세액공제임
2) A는 중소·중견기업, B는 대기업의 세액공제이며, 아래첨자는 최초 공제가 발생한 신고연도를 의미

○ 2024년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이러한 제도변화와 취업자 수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신규 공제액 추정

- 세법개정에 따라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기업규모별(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근로자 유형별(청년 등 상시근로자, 일반 상시근로자) 1인당 공제액이 △20~31.8% 변동
- 공제실적의 지역별·기업규모별·근로자 유형별 비중은 국세청 제출자료 및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등을 바탕으로 구분하고, 2023년 실제 취업자 수 증가율(1.2%)만큼 공제액이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정

[표 5]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로 세법개정 전후의 1인당 공제액 변동 추이

(단위: 만원,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청년 등 상시근로자[1]	1,100→1,450 (31.8)	1,300→1,550 (19.2)	800→800 (0.0)	900→800 (△11.1)	400→400 (0.0)	500→400 (△20.0)
일반 상시근로자	700→850 (21.4)	770→950 (23.4)	450→450 (0.0)	450→450 (0.0)	-	-

주: 1)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청년(19~34세, '22년은 19~29세), 고령(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22년 미포함) 상시근로자 등이 포함
2) ( )안은 세법개정 전후의 1인당 공제액의 변동률(%)

○ 향후 신규 공제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2030년간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하며, 발생한 신규 공제액 추정치를 신고연도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세수효과 추계

- t년도(신고기준) 신규 공제대상으로 포함된 기업의 공제액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t+2년도까지, 대기업은 t+1년도까지 다년간 공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감안하여 세수효과 추계

❑ (2023년 신규 공제액 추정) 2023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실적 2조 9,339억 원 중 신규로 공제를 신청한 금액은 1조 1,194억 원 수준으로 추정

○ 동 제도가 다년간 적용되므로 2023년 공제실적에 2021년과 2022년 공제를 신청한 금액과 2023년 신규 공제 신청액이 합산됨

○ 2019년부터 공제실적을 바탕으로 신규 공제대상에 포함된 기업이 상시근로자수 감소로 인한 공제중단 없이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는다고 가정하여 연도별·기업규모별로 신규 발생한 세액공제 추계

- 2019~2023년 고용증대세액공제 기업규모별 실적을 바탕으로 연도별 신규 발생액을 추정

[표 6] 2023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실적의 연도별 발생액 추정

(단위: 억 원)

			2022	2023	2024
2020년 신규 신청액	소득세		2,311		
	법인세	중소기업	2,428		
		중견기업	454		
		대기업			
	소계		5,193		
2021년 신규 신청액	소득세		2,053	2,053	
	법인세	중소기업	2,790	2,790	
		중견기업	192	192	
		대기업	828		
	소계		5,863	5,035	
2022년 신규 신청액	소득세		4,534	4,534	
	법인세	중소기업	6,732	6,732	
		중견기업	1,416	1,416	
		대기업	429	429	
	소계		13,111	13,111	
2023년 신규 신청액	소득세			4,604	
	법인세	중소기업		4,504	
		중견기업		789	
		대기업		1,297	
	소계			11,194	
舊 고용증대 세액공제 실적				29,34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신고기준)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4년 신규 공제액 추정) 2023년 기업규모별 신규 공제액을 바탕으로 취업자수 증가율 및 지역별·기업규모별 공제액 변화율을 반영하면, 2024년 신규 공제액은 총 1조 2,449억 원으로 추정

○ (법인세) 2023년 기업규모별 신규 법인세 공제액 추정치를 지역별·근로자 유형별로 구분

– 지역별 구분은 2019~2022년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공제액의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 연평균 비중이 2023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구분

* 수도권 비중('19~'22년 평균, %): 중소기업 70.0, 중견 및 대기업 72.3

– 근로자 유형별 구분은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9차년도(2021년 기준)에서 산출한 전년대비 고용증대 기업의 일반 상시근로자와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비중이 20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

*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비중(%): 중소기업 52.8, 중견기업 59.9, 대기업 100.0[2)]

[표 7] 2023년 신규 법인세 공제액의 기업규모별·지역별·근로자 유형별 구분 추정치

(단위: 억 원, %)

2023년 신규 법인세 공제액(A)		지역별		근로자 유형별		지역별·근로자 유형별 추정치(A×B×C)
		구분	비중(B)	구분	비중(C)	
중소기업	4,504	수도권	70.0	청년 등	52.8	1,665
				일반	47.2	1,487
		비수도권	30.0	청년 등	52.8	714
				일반	47.2	638
중견기업	789	수도권	72.3	청년 등	59.9	342
				일반	40.1	229
		비수도권	27.7	청년 등	59.9	131
				일반	40.1	87
대기업	1,297	수도권	72.3	청년 등	100.0	938
		비수도권	27.7	청년 등	100.0	359
법인세 합계						6,590

○ (법인세) 2023년 기업규모별·지역별·근로자 유형별 신규 공제액 추정치 각각 통합고용세액공제 도입으로 인한 공제율 변화 및 취업자 수 증가율을 반영하면, 2024년 신규 법인세 공제액은 7,729억 원 수준으로 추정

- 통합고용세액공제 도입으로 인한 법인세 공제율 변화는 지역별·기업규모별·근로자 유형별로 △20~31.8%, 2023년 실제 취업자 수 증가율 1.2% 적용

[표 8] 2024년 신규 법인세 공제액 추정치

(단위: 억 원, %)

	지역별	근로자 유형별	'23년 공제액 추정치(A)	제도변화 (B)	'24년 공제액 추정치 [{A×(1+B)}×1.012]	
중소기업	수도권	청년 등	1,665	31.8	2,222	5,707
		일반	1,487	21.4	1,828	
	비수도권	청년 등	714	19.2	861	
		일반	638	23.4	796	
중견기업	수도권	청년 등	342	0.0	346	783
		일반	229	0.0	231	
	비수도권	청년 등	131	△11.1	118	
		일반	87	0.0	88	
대기업	수도권	청년 등	938	0.0	949	1,239
	비수도권	청년 등	359	△20.0	290	
법인세 합계						7,729

2) 대기업의 경우, 일반 상시근로자의 증가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미적용

○ (소득세) 국세청이 제출한 2024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소득세 공제액은 4,720억 원

- 국세청이 제출한 2024년 신고연도 기준 소득세 공제액 자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근로자 유형별 구분되지 않음
- 개인 사업자의 규모를 감안하여 전액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였다고 가정
- 근로자 유형별 구분은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9차년도(2021년 기준)에서 산출한 전년대비 고용증대 중소기업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비중(52.8%)이 향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

[표 9] 2024년 소득세 공제액

(단위: 억 원, %)

	'24년 소득세 공제액		근로자 유형별		'24년 공제액 안분
			구분	비중	
소득세	수도권	2,650	청년 등	52.8	1,400
			일반	47.2	1,250
	비수도권	2,070	청년 등	52.8	1,093
			일반	47.2	977
합계		4,720			4,720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향후 신규 공제액 추정) 국회예산정책처의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치(2024.10.)를 반영하면, 향후 신규 공제액은 신고연도 기준 2027년 1조 2,611억 원에서 2029년 1조 2,676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 개정안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은 귀속연도 기준 2026~2028년까지 적용되므로, 신규 공제액은 신고연도 기준 2027~2029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추계

- 국회예산정책처 2026~2028년간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2024.10.)은 0.2~0.4% 수준으로, 귀속연도 기준으로 공제액은 취업자 수 증가율과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

[표 10] 신고연도 기준 신규 공제액 추정치: 2027~2029년

(단위: 억 원, %)

		2027	2028	2029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		0.4	0.3	0.2
소득세		4,782	4,796	4,806
법인세	중소기업	5,781	5,799	5,812
	중견기업	792	794	795
	대기업	1,256	1,260	1,263
	소계	7,829	7,853	7,870
합계		12,611	12,649	12,676

❑ (연도별 세수효과 배분) 신규 공제액을 기업규모별 다년간 공제받는 것을 감안하여 징수기준으로 세수효과를 배분하면 2027년 1조 2,611억 원, 2031년 1조 1,413억 원 등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3년간, 대기업의 경우 2년간 공제가 적용됨을 감안하여 신고연도 기준으로 연도별 세수효과를 추계

- 개인사업자의 공제액은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전액 중소기업의 공제액에 포함

[표 11] 신고연도 기준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치: 2027~2031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27년 신규 공제	중소·중견기업	11,355	11,355	11,355		
	대기업	1,256	1,256			
	소계	12,611	12,611	11,355		
2028년 신규 공제	중소·중견기업		11,389	11,389	11,389	
	대기업		1,260	1,260		
	소계		12,649	12,649	11,389	
2029년 신규 공제	중소·중견기업			11,413	11,413	11,413
	대기업			1,263	1,263	
	소계			12,676	12,676	11,413
합계		12,611	25,260	36,680	24,065	11,413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상시근로자 중 고령 근로자의 연령을 55세로 하향조정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수는 2027년 1조 2,611억 원, 2031년 1조 1,413억 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1조 29억 원(연평균 2조 2,00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동 규정의 고용증대 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은 세액공제가 3년간 적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세수효과는 2027~2031년까지 발생함

- 다만 55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불가능하여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추계에서 제외

[표 12]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소득세 및 법인세, 2027~2031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안 제29조의8 제1항)	12,611	25,260	36,680	24,065	11,413	110,029	22,006

주: 고령의 근로자 연령을 55세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증가된 인원 수의 세수효과를 추계에서 제외하여 과소 추계될 가능성이 있음

Ⅳ. 부대의견

❑ 없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이정훈	박연서
세제분석2과	이수인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수인	02-6788-4839	suin2025@assembly.go.kr